

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

발의연월일 : 2006. 2

발 의 자 : 이은길 의원 외 12인

□ 제정이유

『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』 제3조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국가기준보다 약 10%정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·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가. 환경부령으로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중 지하역사 등 16개 시설군에 대하여 약 10% 정도 강화하여 기준을 정함(안 제2조 및 별표)
- 나. 조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,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조례 공포후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적용토록 함(안 부칙 제1항, 제2항)

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실내공기질 유지기준)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 공포후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적용한다.

발의자 : 이은길

찬성자 : 김홍, 권영복, 이삼순, 임봉규, 임응순, 최환식, 이익훈, 박미진, 최중협  
이원재, 김순덕, 이찬열